## 이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1996 · 3 · 1 조례 제 3호 개정 1998 · 11 · 24 조례 제 250호 개정 2002 · 1 · 10 조례 제 398호 개정 2003 · 6 · 14 조례 제 455호 개정 2007 · 10 · 16 조례 제 683호 일부개정 2021 · 12 · 28 조례 제1792호 전부개정 2022 · 12 · 28 조례 제1889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23 · 3 · 14 조례 제190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 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계 공무원의 범위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1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23·3·14〉

- 1. 부시장
- 2. 국장·담당관·과장급 공무원
- 3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의 규 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
- 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이천시 본청의 담당관·과장과 동일직위 이상인 사람
- 5.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출석·답변이 요구되는 6급 상당의 공 무워

제3조(출석·답변 요청)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- 1. 「지방공기업법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임원
- 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임원

이천시의회에 출석・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

부칙〈2022·12·28 조례 제1889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·3·14 조례 제190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